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4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원 확대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안 제2조)
- 나. 자치법규 근거규정 정비 요청에 따라 후생복지시설 범주 확대
(안 제6조제1호)
- 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현행화를 위해 정원 상한을 15명
으로 확대(안 제8조제2항)
- 라. 후생복지 제도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2.23.~3.15./20일간) 결과: 의견 있음 (미반영)

- 영등포구의회에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과 관련된 조항의 신설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법령 및 협약을 통해 보완 가능하여 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현행화 및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상한 확대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2022.1.13.)된 것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함.
- 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커피전문점 등”을 추가함. 이는 현재 구청

본관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와 같이 구(區)예산 사용 시설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가한 것임.

- **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의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 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하고 향후 조직 개편 등을 감안하여 위원수 상한을 확대함.
- **안 제13조(업무의 위탁 등)**는 후생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 및 직무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재는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운영 등 구의회를 포함한 직원 후생복지제도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인사운영 협약서」에서도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등 직원 후생복지는 영등포구가 주관하여 통합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5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
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8조, 제12조, 제
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나. 연가계획 및 허가 정비(안 제14조)

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15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3. 30.~ 2023. 4. 1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 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서류보관 등)는 공무원이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서 등의 보안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생활의 만족도 및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정비함.
-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24조제14항**을

삭제함.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¹⁾에 근거한 것임.

- 안 제15조(특별휴가)제4항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의 조항을 3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함. 이는 직원복지 향상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6개의 자치구²⁾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13개의 자치구³⁾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3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음.

연번	현행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제1항	제1조의2제1항
2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제3항	제1조의2제3항
3	제8조(출장공무원)	제4조의2제1항~제4항
4	제12조(복장 및 제복)제1항	제1조의3제1항
5	제12조(복장 및 제복)제4항	제1조의3제2항
6	제18조(연가일수)제1항	제7조제1항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0.10.20.)」: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조례상 가족돌봄휴가 및 유사한 휴가제도 해당 조항 삭제 등 개정 필요(부모휴가, 보육휴가 가족진료 휴가 등)

2) 광진구, 금천구, 양천구, 도봉구, 용산구,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3)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강동구, 구로구,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7	제18조(연가일수)제2항	제7조제3항
8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7조제2항
9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제2항	제7조4제2항
10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제5항	제7조제4항
1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제7항	제7조의11
12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3
13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7조의4
14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제7조의10
15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7조의2제1항~제3항, 제6항~제7항
16	제22조(병가)	제7조의5
17	제23조(공가)	제7조의6
18	제24조(특별휴가)제2항	제7조의7제3항
19	제24조(특별휴가)제3항	제7조의7제11항~제12항
20	제24조(특별휴가)제4항	제7조의7제8항
21	제24조(특별휴가)제5항~제6항	제7조의7제4항~제5항
22	제24조(특별휴가)제11항	제7조의7제13항
23	제24조(특별휴가)제13항	제7조의7제6항
24	제24조(특별휴가)제17항	제7조의7제7항
25	제24조(특별휴가)제18항	제7조의7제9항
26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7조의9
27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8
28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6조의2
29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제8조

○ 검토 결과

현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고 추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해당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해왔던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3호로 2023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
결정으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일: 2023. 6. 30.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57’을 ‘1,456’로 개정(감 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별표 3)

- 총계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총계 ‘1,488’을 ‘1,487’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4급 ‘9’를 ‘8’로 개정(감 1명)
- 본청 4급 ‘7’를 ‘6’으로 개정(감 1명)

[별표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개정 전 (현 행)					개정 후				
		총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계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총 계		1,493	1,493				1,492	1,492			
정무직		1	1				1	1			
일반직 계		1,488	1,488				1,487	1,487			
일반직	3급	1	1	-	-	-	1	1	-	-	-
	4급	9	7	1	1	-	8	6	1	1	-
	5급	66	33	2	13	18	66	33	2	13	18
	6급 이하	1,411	1,411				1,411	1,411			
	전문경력관	1	1				1	1			
별정직 계		4	4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3년도 4급 인건비 등 잔액 불용 조치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1)에 의거 생략.

1)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의 “1,457명”에서 “1,45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의 “1,493명”에서 “1,492명”으로 변경함. 이는 본청의 일반직 4급(미래비전추진단장) 정원 1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안 [별표 3]에서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감하고 이에 따른 ‘일반직 계’ 및 ‘총계’를 각각 1명 감함.
-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부터”로 명시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비전추진단 폐지 결정으로 인한 일반직 4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기준 인건비만 산정하여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 금액 범위 안에서 총정원과 기구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미래비전추진단의 폐지 결정으로 인한 2023년도 4급 인건비 잔액은 불용처리 되며,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4호로 2023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한시기구(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비전추진단 폐지(안 제2조, 안 제3조)

나.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부서 이관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6조)

- 미래교육과 이관: 미래비전추진단 → 행정국

- 비전협력과 폐지로 인한 관련 업무: 총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로 이동

- 지방소득세과 신설

- 명칭변경: 부과과 → 재산세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행정국)는 현행 미래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미래교육과”를 행정국에 두는 부서로 추가하고,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대외교류”와 “의료특구”에 관한 사항 및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해 오고 있는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이 담당하는 업무로 이관함.
- 안 제6조(기획재정국)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부서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현행의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제1항). 이에 따라 기획재정국에서 담당

하는 현행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또한, 현행의 행정국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회협력 및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비전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해 옴.

- 그 외에 미래비전추진단과 관련한 조문들을 삭제하여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현 행			개정 후	
	행정국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행정국	기획재정국
부서의 이동 및 변경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명칭변경) 지방소득세과(신설)
업무의 이관 및 변경	의회협력, 법제심사		대외교류	대외교류	의회협력, 법제심사
		지방세 부과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정책,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과학육성, 평생교육, 혁신교육지구 운영	재산세, 법인 세무조사
			의료특구	의료특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신설)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국제금융지구 활성화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방소득세과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미래비전추진단에 속해 있는 미래교육과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비전협력과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재정국에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부서의 총 수는 증감 없이 현행대로 유지함. 신설부서에 따른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함.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6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홈페이지의 정의를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안 제2조)
- 나. “정보화 자문위원회”를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으로 용어 정비(안 제4조)
- 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문구 변경(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3.30.~4.19./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홈페이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총칭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표현 및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시행. 2021.9.23.)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보화 자문위원회”를 “지능정보화 자문위원”으로 변경함.
- 안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는 「전자정부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2.7.12.)으로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전자민원 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이관되어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한 것임.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법적 적합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7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개정(시행. 2023.6.28.)에 따른 연령규정 정비
-총 3개 조례 / 4개 조문(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별 조례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u>만 18세 이상</u> 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u>18세</u>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어린이“란 <u>만 6세 이상 만 12세</u>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생을, “청소년”이란 <u>만 13세 이상 만 18세</u>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7. (생략)</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30% 감면</p> <p> 가. (생략)</p> <p>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u>만 18세</u>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p> <p> 다·라. (생략)</p> <p>③·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6세 이상</u> ----- ----- ----- <u>13세 이상</u> ----- -----.</p> <p>7.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 ----- <u>18세</u> ----- -----</p> <p> 다·라.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만 19세</u> 이상의 구민이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 ----- ----- <u>19세</u> ----- ----- ②·③ (현행과 같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까지** 개별 조례에서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에 대해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관련하여 “만”표기를 모두 삭제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 및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¹⁾에 따라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자 확립된 판례이지만 일상생활과 일부 법률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이 달라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사유를 말하고 있으며,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3. 2.)

법제처 정비 권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에 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연령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9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반장 위촉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 정비 실시(안 제3조·제8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7. ~ 5. 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서 통장의 위촉은 현행대로 필수사항으로 유지하고 반장의 위촉은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

※ 「지방자치법」 제7조는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고 명시하여 통을 두고 있는 한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반면, 반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명시 규정은 없음.

- 그 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0조)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반장 구성원이 점차 고령화되고 맡은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통·반장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0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증진,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대표
이사에게 재단 대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화재단 사업 내용 중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2호)
- 나.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안 제7조제2항)
- 다. 대표이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3항)
- 라. 당연직 이사 중 복지국장 삭제(안 제7조제5항제3호)
- 마. 구의회의 선임직 이사 2인 추천 조항 정비(안 제7조제6항)
- 바. 감사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7조제7항)

- 사. 이사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순서 정비(안 제8조제1항)
- 아.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명기(안 제8조제2항)
- 자. 감사의 권한 관련 내용 띄어쓰기 정정(안 제8조제3항)
- 차. 재단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5. 4.~5. 24./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재단의 사업)는 영등포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대림,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이는 현재 구립

도서관 명칭이 일부 변경되고 위·수탁 도서관의 개소 수 증가 및 구립 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일부에 대해서도 위탁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변경한 것임.

- 안 제7조(임원)제2항은 문화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문화재단 운영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7조(임원)제3항은 대표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 또한, 안 제7조(임원)제7항에서 감사의 임명 시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현행의 조항을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
- 안 제7조(임원)제5항은 당연직 이사에서 복지국장을 제외함. 이는 청소년문화의 집 위·수탁이 종료되어 업무 관련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7조(임원)제6항은 선임직 이사의 임명 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을 선임직 이사 모두 공모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
- 안 제8조(임원의 직무)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직무를 조정함. 이는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0조(조직 및 정원)는 재단 직원에 대한 임면권의 주체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 이는 안 제8조(임원의 직무)에서 대표이사에게 재단의 대표권을 부여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함에 따라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 하려는 것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공개모집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재단의 역할이 확대·다변화됨에 따라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구청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¹⁾가 맡는 등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문화재단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내 22개 자치구 중 이사장을 민간 이사장으로 두고 있는 12개의 자치구: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종로구, 중랑구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